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04

발의연월일: 2022. 8. 8.

발 의 자:이상헌·김두관·문정복

박재호 • 신정훈 • 유정주

임오경 · 장철민 · 조응천

한병도 • 한준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게임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는 여러 형태의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유도와 게임이용자 기만이 지나 치게 심해진 상황임.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음.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므로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게임제작업자와 게임 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 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당 게임물마다"를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물 및 그 광고·선전물마다"로,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를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제작업자 등은 제21조제1항에 따라분류된 등급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용자 연령을 달리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게임물에 대하여"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표시의 방법"을 "표시에 관한 기준, 범위,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직ㆍ 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 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 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 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 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 제33조(표시의무) ① -----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 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 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게임을 유통시키거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 해당 게임물 및 그 광고ㆍ선전 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 물마다-----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 표시하여야 한다. 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표시의 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제작업자 등은 제21조제1항에 따라분류된 등급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용자 연령을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②	
게임물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
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기	위해
서는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u></u>
③	
<u>표시에 관한 기준,</u> 범	위, 방
법	